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경남정치망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6. 05. 04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원	경고(1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중소기업상가 담보대출 심사 소홀 등

- 기업시설자금대출 취급 시 대출심사,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, 담보물에 대한 외부 감정평가 의뢰 업무 및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·처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.

< 관련법규 >

- 「조합정관」 제48조(이사회)
-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제10조(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)
-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1편 제45조(승인대출금 업무처리), 제48조의6(업무처리), 제54조(심사사항), 제85조의37(적용대상), 제3편 제2조(업무취급 원칙), 제8조(신용조사 및 평가 구분), 제10조(조사자료), 제27조(일반사항), 제29조의2(휴폐업기업에 대한 확인 등), 제38조(소요자금 산출방법), 제4편 제1조(관리원칙), 제3조(중점관리대상), 제5조(채무자 실태조사), <서식 제268호>{이자상환능력 검토 의견서(법인용)}
- 「상호금융 채권관리업무방법」 제8장 제377조(비업무용자산의 취득 억제), 제388조(감정평가 실시), 제390조(처분원칙, 처분방법), 제395조(공매방법)
- 「담보물 가격조사 업무방법」 제23조(외부감정평가 의뢰방법), <별표1-1> 외부감정평가 의뢰 기준표